

C2013-37-2 | 2013. 1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 2013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김 광 선 연 구 위 원  
노 승 철 전문연구원  
윤 병 석 연 구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연구 담당**

|       |         |                          |
|-------|---------|--------------------------|
| 김 광 선 | 연 구 위 원 | 연구 총괄, 제1장, 제4장, 제5장 집필  |
| 노 승 철 | 전문연구원   | 제2~3장 집필                 |
| 윤 병 석 | 연 구 원   | 제2장, 제4장 집필, 데이터 수집 및 정리 |

## 머리말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촌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항목과 수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국가적 기준이다. 정부는 농어촌 서비스기준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1년부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하여금 업무 위탁을 통해 그 이행실태를 매년 점검·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동 업무위탁에 의해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하고, 제도 운영의 성과를 평가하여 중·장기 운영 방향 및 정책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은 2013년에 일부 개정되어 9개 부문 32개 기준 항목으로 개편되었다. 이 중 주거 부문의 하수도와 교육 부문의 방과후학교 등 4개 기준 항목만이 현재 목표를 달성하였다. 비록 목표를 달성한 항목 수가 적지만, 농어촌서비스기준이 시행된 2011년과 비교할 때 2013년 현재 이행실태가 향상된 항목이 21개 항목에 달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농어촌 주민들 역시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 전후를 기준으로 관련 공공서비스 수준이 다소 향상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년 간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가 운영되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검토하고 정책 수요를 분석한 결과,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는 중·장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정책적 기능이 정립되어야 한다. 둘째, 농어촌서비스기준과 삶의 질 향상 계획 간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촉진을 위한 예산과 사업을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촉진을 위한 추진조직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에서 정비해야 한다. 다섯째,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을 축소하고 목표를 수정하는 등 기준 자체의 내용을 정비해야 한다.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이 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농어촌 시·군의 담당 공무원들, 관계 전문가들과 농어촌 주민들의 도움에 감사드린다. 또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한다.

끝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정착되길 바란다.

2013.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쇠세균



## 요 약

###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를 다양한 방법으로 점검·평가하고, 동 기준 제도의 개선 방안과 기준 이행 촉진 방안을 발굴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점검통계를 활용하여 농어촌서비스 기준의 이행실태를 기준 항목별로 점검한다. 둘째, 농어촌서비스기준 부문별 심층연구를 통해 문화 부문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운영 실태와 정책 수요를 분석한다. 셋째,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 평가 및 관련 정책 수요 분석을 통해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중·장기 운영 방향을 제시한다.

###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이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우선, 제2장에서는 농어촌서비스 기준 점검통계와 이행지수를 활용하여 부문별, 지역별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목표 달성을정도)를 점검·평가하였다. 제3장에서는 문화 부문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운영 현황과 정책 수요를 조사·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 및 농어촌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증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의 실태와 성과를 평가하고 관련 정책 수요를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결과와 제도 운영 성과 평가 및 정책 수요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의 중·장기 운영 방향과 정책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특히 이번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중·장기 운영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2011년부터 3년 간 실시한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 실태와 정책 수요 관련 조사 결과들을 활용하였다. 2011년도의 주요 조사 내용은 삶의 질 향상 계획이 관

련법에 규정된 대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내용을 어느 정도나 반영하고 있는지, 즉 농어촌서비스기준의 계획 수용성을 분석하였다. 2012년에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현장 적합성과 달성 가능성 분석을 위해 농어촌 시·군 기획업무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622명의 농어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 만족도와 정책 수요를 조사하였다. 2013년에는 농어촌 주민 700명을 대상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 향상 여부에 대한 만족도와 서비스 수요를 조사했으며,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 평가를 위해 농어촌서비스기준 및 삶의 질 향상 정책 관련 전문가 30명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 3. 주요 연구 결과

우선, 점검통계를 활용해 농어촌서비스기준 각 항목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어촌서비스기준 9개 부문 32개 항목 중 목표를 달성한 항목은 주거 부문의 하수도, 교육 부문의 방과후학교, 응급 부문의 도서·벽지서비스, 그리고 안전 부문의 경찰 출동 등 모두 4개 항목이다. 그러나 도서·벽지서비스의 경우 헬기·선박을 이용한 환자이송체계의 보다 세부적인 질적 측면이 고려되지 않았고, 경찰 출동의 경우 경찰청에서 코드 1(응급상황)에 대한 건별 출동시간이 아닌 시·군 평균 출동시간으로 점검이 이루어지는 등 문제점이 있어 향후 이행실태 점검 방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 둘째,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가 시행된 2011년도 대비 2013년도의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비교해 보면 많은 기준 항목의 이행실태가 향상되었다. 즉 32개 항목 중 21개 항목이 2011년 대비 2013년의 이행실태가 향상되었으며, 1개 항목은 목표 달성정도가 동일하였다. 반면, 6개 항목은 이행실태가 다소 하락하였다. 한편, 1개 항목(경찰 순찰)은 2013년에 신설되어 연차별 비교가 불가능한데다, 특히 관련 점검통계 구득도 불가능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하지 못하였다. 다른 3개 항목은 기준 내용이 개정되었거나 이행실태 점검방법이 수정되어 연차별 이행실태 비교가 불가하였다.

9개 부문 20개 항목 22개 지표를 통해 이행지수를 산출하여 부문별, 지역별로 점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의료 부문의 이행지수가 가장 높고, 응급 부문의 이행지수가 가장 낮으며, 교육, 보건의료, 응급 부문을 제외한 다른 부문은 군지역에 비해 도농복합시가 높다. 군지역은 보건의료, 교육 부문의 이행지수가 가장 높고, 도농복합시는 정보통신과 보건의료 부문의 이행지수가 가장 높다. 둘째, 도별 종합 이행지수는 제주도와 경기도가 가장 높고 전라북도가 가장 낮다. 방과후학교 참여율 등 7개 항목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행지수가 1 이상이었으나 도시가스 보급률 등 8개 항목은 이행지수가 0.5 이하인 지역이 많아 위 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2012~13년 간 종합이행지수 순위를 3개 분위로 나누어보면 전체 시·군 중 43개 시·군의 분위가 상승하고, 36개 시·군은 하락하였다. 상승한 시·군들은 경기도와 강원도, 경상남도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문화 부문에 대한 심층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농어촌 주민들은 농어촌서비스기준이 시행된 지난 3년 간 문화 부문의 공공서비스가 대체로 개선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여전히 문화 향유 기회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다만 문화 향유 기회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전문가들은 프로그램 및 강사 지원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반면, 농어촌 주민들은 관람이나 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 지원이 보다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농어촌 주민들은 문화에 대한 수요가 어느 특정 연령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농어촌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을 정도로 문화에 대한 수요가 농어촌 지역에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농어촌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증대를 위해서는 전라북도와 같은 ‘작은’ 시리즈를 통한 시설 공급, 유휴 공동시설을 활용한 문화시설 공급, 문화·예술 동호회 지원을 통한 마을 또는 지역사회 단위의 문화활동 증진 등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끝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 및 정책 수요 등을 분석한 결과,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중·장기 운영 방향과 정책 개선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중·장기 운영 방향으로는 ①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정책적 기능 정립, ② 농어촌서비스기준과 삶의 질 향상 계획의 연계 강화, ③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촉진을 위한 예산·사업 정비, ④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촉진을 위한 추진조직 정비, ⑤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의 축소와 목표 수정 등을 제시하였다.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촉진 및 관련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로는 ①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촉진지역 제도 도입, ② 관계 부처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촉진을 위한 특화사업 추진, ③ 주민 참여적 지역사회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④ 농어촌 지역에 적합한 서비스 공급 방안 발굴 등이 필요하다.

## ABSTRACT

###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of Rural Services Standard of 2013

The rural services standard as an advanced system was established in 2011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in the rural areas. The rural services standard as defined by the President's decree is to mean the criteria and level of minimum public services needed for people to live daily life in the rural areas, and is operated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in the rural areas. The rural services standard is composed of 32 items from the 9 service sectors including housing, transportation, education, public healthcare, welfare, emergency, culture, and information & communication. Their detailed items and level of goal are publicly published by notification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The rural services standard system has been operated for 3 years. During the tim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KREI) has annually monitored the level of achievement for the standard. KREI has reported the monitoring results to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provoke more active political competition for accomplishing the standard. As a result, the level of accomplishment for the standard in part has been continuously improved for the past 3 years. This implies that not only the political effect has been great but also the quality of life in the rural areas has been gradually improved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standard system.

On the other hand, the standard system has brought up various problems during its operation. Problem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system of rural services standard such as policy programs, budget, regulations, plan, and so forth have been pointed out. The adequacy of the detailed contents of the standard has been also brought up as a main problem. Thus at this point of time, it is needed to cool over the problems looking back the past years of the operation of the standard system.

Under this background, this study is to review and evaluate the results of implementation of rural services standard in each rural Sis and Guns, and in overall rural areas. Another study purpose is to analyse the problems of the standard system which have occurred in the past 3 years and to propose relevant improvement measures.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supply of public services have been increased by operation of the standard system. However, it is also found that the policy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in the rural areas is not relatively significant since duration of the standard system has not been long enough. Moreover, majority of rural residents are not aware of the standard system so active promotion is required for the future. Second, policy function of the standard system needs to be established from the medium and long term perspective. In other words, the standard system shall play a role as not only for 5 year mid-term policy goal but also as an ultimate standard as a long-term policy direction. Third, the relevant regulations are to be amended for the standard system as not recommended but mandatory, and to be reflected in planning scheme in more concrete and detailed form. Fourth, a separate budget is needed to induce interests and active participation from the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the standard. Fifth, an independent organization is needed and reorganized not only from the central government but also from the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promote policy efforts in achieving the standard. Lastly, the items and level of achievement are to be revised for reasonable operation of rural services standard.

Researchers: Kwang-Sun Kim, Seung-Chul Noh, and Byeong-Seok Yoon.

Research Period: 2013. 4~2013. 12

E-mail Address: yeskskim@krei.re.kr

## 제 1 장

### 서 론

#### 1.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도입 및 운영 경과

##### 1.1. 농어촌서비스기준의 개념과 도입 의의

- 2000년대부터 서구 선진국에서는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 서비스 제공에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였다.
  - 영국의 경우 1980~90년대 광우병의 창궐과 농어촌의 사회적 고립 및 경제적 쇠퇴가 심화되면서 농어촌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2000년에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를 도입하였다(송미령 등, 2009a).
  - OECD에서도 2008년 독일 쾨льн(Cologne)에서 개최된 농촌발전포럼에서 ‘농어촌 지역 서비스 전달’에 대한 주요 이슈들을 상정하여 회원국 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등 농어촌 주민을 위한 기초적인 공공서비스 공급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있다(OECD, 2008).
-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중반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초생활서비스 공급, 그리고 2000년대 말에는 농어촌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였다(송미령 등, 2009a).

- 김대중 정부까지 공공서비스의 공급 정책은 주로 취약계층에 한정된 사회 서비스 또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이라는 공공부조형 사회서비스 관점에 기반하였으나, 노무현 정부에서는 생활지원서비스 제도가 도입되면서 국민의 삶의 질 중대라는 관점으로 공공서비스 공급 정책이 전환되었다.
- 이에 더해 2000년대 말에는 기존의 농어촌 공공서비스 공급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응급, 문화여가, 정보통신 등 8대 공공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한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도입이 제안되었다(송미령 등, 2009b).
- 이와 같이 농어촌 지역의 공공서비스 공급에 대한 국내외 정책 환경이 변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부터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가 도입·시행되고 있다.
  - 2010년 7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을 개정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1년 1월부터 동 제도를 시행하였다.
  - 이와 함께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시행령」에 농어촌서비스기준의 항목과 세부내용을 제시하고 항목별로 구체적인 달성 목표치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고시’로 공표하였다.
- 기존 논의들에 의하면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촌 지역에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s) 항목과 수준’을 의미한다(학술적 개념).
  - 이를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서는 ‘농어업인 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로 재정의하고 있다(법적 개념).
  - 「삶의 질 향상 특별법」(제44조)에 의하면 ‘정부는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의 목적이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임을 밝히고 있다.

- 농어촌서비스기준과 관련한 기준의 논의들을 종합할 때 동 제도의 도입 목적이나 의의는 다음과 같다(송미령 등, 2009a; 김광선 등, 2010).
  - 첫째,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촌의 여건을 감안하여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 둘째,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도입은 도·농간 격차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 셋째,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단순한 하드웨어 공급 위주의 정책 목표가 아닌, 농어촌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공급 방안 마련을 촉구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서비스전달체계 혁신에 기여할 수 있다.
  - 넷째, 농어촌 주민들 입장에서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삶의 질 수준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개발과 시행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다섯째, 정부 입장에서도 구체적인 정책 목표의 수립, 그리고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한 정책과정의 선진화 등을 추구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1.2.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 경과

### □ 관련법과 계획의 운영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근거법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의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시 계획 내용에 농어촌서비스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 이 외에도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과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도 각 부처의 장과 지자체장이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각각의 해당 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도입 당시 8개 부문 31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나 2013년부터 ‘안전’ 부문과 그 하위의 ‘경찰순찰’ 항목을 신설하여 현재는 9개 부문 32개 항목으로 개편하여 운용되고 있다(2013.9.9일자 농식품부 고시).
  - 최근 농어촌 지역에 범죄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 역시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여 “범죄취약 지역은 마을별로 1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라는 기준을 신설하였다.<sup>1)</sup>
  - 이는 살인(미수 포함),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과 같은 5대 강력범죄가 발생했던 범죄취약 지역에 대한 경찰의 순찰을 강화시키겠다는 정책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 신설 항목 외에도 교육 부문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항목과 보건의료 부문의 ‘순회방문’ 항목, 안전 부문의 ‘방범설비’ 항목의 세부내용을 일부 변경하였다.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항목의 경우 “지역여건에 맞는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하고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라는 기존의 내용이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촉진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로 수정하였다.
  - ‘순회방문’ 항목은 “마을별로 월 1회 이상 보건소 등의 전문 인력의 순회 방문을 받는다.”라는 기존의 내용에 따라 순회방문 서비스를 모든 마을에 제공하는 것이 불필요하기도 하며, 실제 목표의 달성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평가되어 “의료 접근성이 낮은 마을에서는 마을별로 월 1회 이상 보건소 등 전문 인력의 순회 방문을 받는다.”로 수정하였다.
  - ‘방범설비’ 항목은 “도난방지 등을 위한 방범용 CCTV가 주요 간선도로 길목에 설치되어 있다.”를 “절도, 강도 등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 지점과 주요 진입로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로 보다 구체화 하였다.

---

1) 2012년 10월 5일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의 강력범죄 발생건수가 2009년 1천46건에서 2011년 1천471건으로 2년 새 40% 정도 증가하였음.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어촌 주민 6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2012년), 범죄에 대해 ‘불안하다’고 응답한 주민의 비중이 59.3%에 달했음.

표 1-1. 현행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부문·항목·세부내용

| 부문      | 항목               | 세부내용  |
|---------|------------------|---|
| 1. 주거   | (1) 주택           |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거주가구) 비율을 90% 이상으로 한다.   |
|         | (2) 난방           |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을 50% 수준으로 하고,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우선 추진한다.                                  |
|         | (3) 마을공동시설       | 경로당,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         | (4) 상수도          |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75% 이상으로 한다. 지자체는 원수의 수질을 검사하고, 먹는 물 수질기준에 따른 수질관리를 해야 한다.                                     |
|         | (5) 하수도          | 하수도 보급률을 71% 이상으로 한다.   |
| 2. 교통   | (6) 대중교통         | 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 정류장에서 노선버스, 순환버스 등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수요대응형 준공공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
|         | (7) 여객선          |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행된다. 도서의 주민은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
|         | (8) 인도(人道)       | 읍·면 소재지에 접근하는 주요 농어촌 생활도로 정비시 차도와 구분된 인도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
| 3. 교육   | (9)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
|         | (10) 고등학교        | 시·군에 1개교 이상 우수 고등학교를 육성한다.  |
|         | (11) 폐교          | 폐교 시 학생들의 통학 및 폐교시설의 활용 대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
|         | (12) 방과후 학교      | 교과 과목, 특기 적성 등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 비율을 70% 이상으로 한다.  |
|         | (13) 의견수렴        | 시·군에 지자체와 교육청, 주민 등으로 구성된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
| 4. 보건의료 | (14) 평생교육        | 읍·면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거점시설이 1개 이상 운영된다.   |
|         | (15) 진료 서비스      | 시·군내에서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등 중요과목 의사 진료가 가능하다.   |
|         | (16) 순회방문        | 의료 접근성이 낮은 마을에서는 마을별로 월 1회 이상 보건소 등 전문 인력의 순회 방문을 받는다.  |
| 5. 복지   | (17) 의약품 구입      | 자동차로 20분 내에 일반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   |
|         | (18) 노인          |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         | (19) 청소년         | 자동차로 30분 내에 청소년센터에 도달할 수 있다.  |
|         | (20) 아동          | 자동차로 20분 내에 초등학생들을 위한 아동센터 등 방과후 돌봄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

| 부문      | 항목                    | 세부내용  |
|---------|-----------------------|---|
| 6. 응급   | (21) 영유아              |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자동차로 20분 내에 소규모 어린이집에 도달할 수 있다.                                      |
|         | (22) 다문화 가족           | 자동차로 30분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 교통불편으로 센터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 7. 안전   | (23) 응급 서비스           | 응급환자 발생시 기본적인 응급 장비가 마련된 구급차가 30분 내에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한다.                                   |
|         | (24) 도서·벽지에 대한 응급 서비스 | 낙도·벽지에 헬기·선박을 이용한 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
| 8. 문화   | (25) 경찰 순찰            | 범죄취약 지역은 마을별로 1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  |
|         | (26) 방범설비             | 절도, 강도 등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                                   |
|         | (27) 경찰 출동            | 112 신고 시 출동시간을 10분 이내로 한다.  |
|         | (28) 소방 출동            |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55% 이상으로 한다.                                    |
| 9. 정보통신 | (29) 독서               | 읍·면 내에서 도서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다.   |
|         | (30)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 자동차로 30분 내에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 도달할 수 있고,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
|         | (31) 찾아가는문화 프로그램      |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과 지역 자체 문화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연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다.                     |
| 9. 정보통신 | (32) 초고속망             | 농어촌 어디에서나 초고속망 접속이 가능하고, IPTV시청이 가능한 광대역통합망 구축률을 80% 이상으로 한다.                         |

## □ 관련 사업과 예산의 운영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목표 달성(기준 이행)을 위한 별도의 정책사업과 예산 없이 운영되고 있다.
  - 그러나 ‘삶의 질 향상 계획’ 수립 시 관련 내용, 즉 목표 달성(기준 이행)을 위한 내용을 함께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관련 사업 및 예산 역시 큰 틀에서는 삶의 질 향상 정책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제2기 삶의 질 계획의 사업예산은 5년간(2010~14) 총 34조5천4백억 원이며, 이 중 국비는 22조6천8백억 원이다.

- 한편 농어촌서비스기준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각 부처의 예산은 2013년 기준 연간 3조4천2백억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난다.
  - 이중 보건복지부 예산이 30.8%, 환경부 예산이 28.9%,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15.1%, 여성가족부 예산이 3.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 부문별로는 주거 부문이 47.6%, 복지 부문이 27.4%, 보건의료 부문이 6.4%, 안전 부문이 5.3%, 교육 부문이 4.9%, 교통 부문이 3.5%, 문화 부문이 2.8%, 응급 부문이 1.2%, 그리고 정보통신 부문이 0.8%를 차지한다.
  - 전체 예산은 2012년도의 3조7백억 원에 비해 11.6% 증가하였다.

표 1-2.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부문별 사업 예산

단위: 백만 원

| 부문    | 주거        | 교통      | 교육      | 보건의료    | 복지      | 응급     | 안전      | 문화     | 정보통신   | 전체        |
|-------|-----------|---------|---------|---------|---------|--------|---------|--------|--------|-----------|
| 2012년 | 1,430,861 | 109,911 | 174,929 | 189,912 | 830,397 | 36,72  | 169,163 | 96,714 | 29,426 | 3,068,034 |
| 2013년 | 1,629,548 | 120,229 | 169,442 | 217,655 | 937,790 | 42,703 | 182,051 | 96,842 | 28,332 | 3,424,592 |
| 증감    | 13.9%     | 9.4%    | -3.1%   | 14.6%   | 12.9%   | 16.3%  | 7.6%    | 0.1%   | -3.7%  | 11.6%     |

주: 자세한 사항은 &lt;부록 1&gt; 참조.

#### □ 추진 조직의 운영

-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을 위해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운영세칙’에 의거해 2011년부터 범부처 협의체인 ‘농어촌서비스기준 협의회’를 자문기구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동 협의회는 위원장(삶의 질 향상 위원회 사무국장)을 포함해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 및 농어촌 주민 등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운용, 달성 정도의 평가 등에 대해 삶의 질 향상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자문에 응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 2012년 4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분석하도록 하고 있다.
  - 동 업무는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44조와 동 법의 「시행규칙」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평가는 전문지원기관 지정 이전인 2011년부터 현재까지 3년 동안 추진되어 오고 있다.

## 2. 농어촌서비스기준 점검·평가의 목적과 방법

### 2.1.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의 목적<sup>2)</sup>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그 법적 근거의 마련과 운용을 위한 계획체계 내 수용에도 불구하고 달성 여부는 의무 사항이 아닌 노력·권고 사항이다.
  -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그 달성을 정도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의 이행을 강제할 만한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이나 지자체계획의 경우는 해당 계획의 수립과 시행 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달성하도록 ‘노력’하도록 권고 수준에서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를 매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 제시함으로써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 이행실태 점검·평가를

---

2) 본문의 해당 부분은 김광선 등(2012)의 「201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의 내용을 발췌하여 재수록한 것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첫째,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들 중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또는 보다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자료를 정부 및 지자체에 제공함으로써 정책추진의 합리화를 도모하도록 한다.
  - 둘째, 달성해야 할 객관적 목표와 현 실태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정부 및 지자체로 하여금 관련 정책을 개선하고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 셋째, 이행실태 점검·평가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각 농어촌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실태를 농어촌서비스기준이라는 객관적 기준과 비교해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넷째, 농어촌 주민들이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의 항목과 수준이라는 객관적 기준, 그리고 현 실태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 다섯째, 삶의 질 향상 정책과 관련하여 삶의 질 향상의 평가 지표로 활용 함은 물론, 분석 결과를 예산편성 및 신규정책 발굴에 활용할 수 있다.
- 특히 2013년도 이행실태 점검·평가는 기준 자체의 목표 달성을 정도를 점검·평가하는 것 외에도, 지난 3년 간 운영해온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과 정책 수요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중·장기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목적을 지닌다.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선진제도 중 하나로 삶의 질 향상 정책에 도입되었지만,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내용을 반영해야 할 제2기 삶의 질 향상 계획이 동 제도 시행에 앞서 수립됨으로써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시행 초기부터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 이 외에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가 시행된 지 약 3년이 지나고 있지만 제도 시행의 궁극적인 목적의 불명확성, 별도 예산이 없는 이유로 발생하는 지자체의 관심 저하, 기준 내용 자체의 문제, 추진 조직의 미비, 점검·

평가 결과의 정책적 활용 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그간 추진해온 다양한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정책 수요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5년(제3기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 기간)을 준비하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의 중·장기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의 주요 내용과 방법

-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가 2011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당해 연도부터 매년 각 기준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하고 있다.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 점검·평가는 연차별 공통추진업무와 연차별 특별추진업무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다.
- 연차별 공통추진업무는 점검통계와 이행지수를 활용한 정량적 방법의 이행실태 점검으로 매년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통계청 등 중앙행정기관에서 공표하는 공식통계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내부자료,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 각 항목별 이행실태와 기초자치단체별 이행실태를 매년 점검하고 있다.
  - 또 점검통계에 의한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이행지수로 변환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 부문별, 그리고 지역별 이행실태를 비교 평가하고 있다.
- 연차별 특별추진업무는 농어촌서비스기준 부문별 심층연구와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을 평가하기 위한 연차별 조사로 추진되어 왔다.
  - 2011년도의 경우에는 제2기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농어촌서비스기준 반영 정도, 그리고 사례지역에 대한 시·도계획(충남)과 시·군·구계획(화천·장흥)의 농어촌서비스기준 반영 정도, 기초자치단체 단위

에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을 위한 사업예산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 2012년도의 연차별 특별추진업무로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주요 부문별 심층연구로서 ‘농어촌 도로·교통 부문’에 대한 심화연구, 농어촌서비스기준 개선안 마련을 위한 현장 적합성 및 달성 가능성 조사와 농어촌 주민의 공공서비스 만족도 및 정책 수요 조사 등을 수행하였다. 이 외에도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모범사례를 발굴하였다.<sup>3)</sup>
- 2013년도의 연차별 특별추진업무로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중 문화 부문에 대한 부문별 심층연구를 수행하였다. 농어촌 주민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문화 부문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운영 실태와 향후 정책 수요를 분석하였다. 이 외에도 특별추진업무로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였다.

---

3) 해당 모범사례는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총괄팀에서 보완하여 2013년 7월에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1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사례」(한국농촌경제연구원)로 엮어서 발간하였음.

표 1-3.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의 연차별 추진 방법

| 구분    | 연차별 공통추진업무  | 연차별 특별추진업무   |
|-------|---|--|
| 2011년 |   | <p>(3)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삶의 질 향상 계획 반영 실태 분석<br/>           ① 기본계획 분석<br/>           ② 2011년 시행계획 분석<br/>           ③ 시도계획(충남), 시·군계획(화천군·장흥군) 심층 분석</p> <p>(4) 사례지역 심층조사<br/>           ① 시·군 단위 삶의 질 향상계획 분석<br/>           ② 기준 항목 관련 사업예산 분석<br/>           ③ 읍·면 단위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조사</p> |
| 2012년 | <p>(1) 점검통계를 활용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br/>           ① 공식통계 구축<br/>           ② 부처 협조를 통한 통계 구득<br/>           ③ 지자체 행정조사 실시</p> <p>(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br/>           ① 종합·부문별 이행지수<br/>           ② 핵심 이행지수<br/>           (2013년에는 제외)</p> | <p>(3) 농어촌서비스기준 주요 부문별 연구<br/>           ① 농어촌 도로·교통 부문</p> <p>(4) 농어촌서비스기준 개선안 마련<br/>           ① 농어촌서비스기준 현장 적합성 및 달성 가능성 조사<br/>           ② 농어촌 주민의 공공서비스 만족도 및 정책 수요 조사</p> <p>(5)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모범사례 발굴<br/>           → '총괄팀'에서 별도 자료집 발간</p>                     |
| 2013년 |   | <p>(3) 농어촌서비스기준 주요 부문별 연구<br/>           ① 문화 부문 심층연구</p> <p>(4)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 평가<br/>           ①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 전문가 평가 조사<br/>           ②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공공서비스 향상 여부에 대한 주민 만족도와 서비스 수요 조사</p> <p>(5)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중·장기 운영 방향 제시</p>   |

## 제 2 장

### 2013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

#### 1. 점검통계에 의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 1.1. 이행실태 점검 개요 및 방법

###### 1.1.1.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통계 구축

- 2013년 농어촌서비스기준은 크게 9개 부문, 32개 기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다시 45개의 세부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4)</sup>
  - 32개의 서비스기준 항목 중 일부는 내용에 따라 2~3개의 세부기준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점검 내용 및 방법을 달리한다.
  - 예를 들어 주거 부문 난방 항목의 내용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을 50% 수준으로 하고,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우선 추진한다’의 경우, ①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 50% 수준’과 ②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난방비 저감정책 우선 추진’의

---

4) 2012년 농어촌서비스기준은 크게 8개 부문, 31개 기준(44개 세부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고지 제2013-131호에 의해 9개 부문, 32개 기준으로 변경되었으며,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45개 세부기준으로 구분되었음.

두 개의 세부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 45개 세부기준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총 53개 통계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공식통계 외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자료 협조와 지자체를 통한 행정조사가 필요하다(표 2-1).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통계 구축에 있어 공식통계로 구득이 가능한 것은 12개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협조(각각 29개, 11개)가 필요하다.
  - 교통 부문의 1개 세부기준의 경우 법률에 의한 의무적인 사항으로서, 이는 이미 달성된 것으로 간주한다.<sup>5)</sup>
  - 교통 부문: 도서지역 거주민의 여객선 운임 일부 지원(「삶의 질 향상 특별법」, 「해운법」)

표 2-1.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 현황

단위: 개

| 9개 부문 | 서비스 기준 | 세부 기준 | 통계 확충 범위 | 구득 가능 통계 | 통계 보완     |          | 기타 |
|-------|--------|-------|----------|----------|-----------|----------|----|
|       |        |       |          |          | 중앙행정기관 협조 | 지자체 행정조사 |    |
| 주거    | 5      | 8     | 9        | 26)      | 5         | 2        |    |
| 교통    | 3      | 5     | 5        | 1        | 1         | 2        | 1* |
| 교육    | 6      | 7     | 7        | 0        | 6         | 1        |    |
| 보건의료  | 3      | 3     | 5        | 1        | 1         | 3        |    |
| 복지    | 5      | 6     | 9        | 6        | 2         | 1        |    |
| 응급    | 2      | 3     | 4        | 0        | 4         | 0        |    |
| 안전    | 4      | 5     | 6        | 0        | 6         | 0        |    |
| 문화    | 3      | 6     | 6        | 2        | 2         | 2        |    |
| 정보통신  | 1      | 2     | 2        | 0        | 2         | 0        |    |
| 계     | 32     | 45    | 53       | 12       | 29        | 11       | 1  |

주: \*는 법률에 의한 의무로서 이미 달성한 것으로 간주한 항목을 의미함.

5) 주거 부문 상수도 항목의 세부기준 '기초지자체 원수 수질 검사 및 수질 기준에 따른 수질 관리'의 경우 2012에는 「수도법」에 의한 의무사항으로 달성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2013년에는 실제 수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함.

- 공식통계를 비롯하여 중앙행정기관 내부자료 및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하여 대부분의 점검통계를 구축하였으나, 일부 구축하지 못한 통계는 대체자료를 활용하였다(표 2-2 참조).
  - 경찰 순찰 항목과 관련하여 행정리별 5대 강력범죄 현황과 순찰계획 자료에 대한 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자료의 공간 단위가 부적합하였다.
  - 행정리별 방법용 CCTV 현황에 대한 자료 역시 아직 정확하게 구축되지 않아 행정조사 결과로 대체하여 활용하였다.
  - 경찰 출동 소요시간 자료는 시군별 평균 소요시간만이 구득 가능하였다.
    - 응급서비스, 소방 출동의 경우 건별 소요시간이 협조되어 보다 정확한 이행실태 점검이 가능하였다.

표 2-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통계 구축 현황

| 부문 | 관련 항목   | 통계 구분 | 통계명  | 구축 여부       | 비고 |
|----|---------|-------|--|-------------|----|
| 주거 | 주택      | 주통계   | 시·군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현황(2010년 기준)                 | ○<br>(통계청)  |    |
|    | 난방      | 주통계   | 시·군별 읍·면부 도시가스 보급률 (2012년 기준)                  | ○<br>(산자부)  |    |
|    |         | 부통계   | 시·군별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 결과(2012년 누적)                 | ○<br>(산림청)  |    |
|    | 마을 공동시설 | 부통계   | 시·군별 그린홈100만호사업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보급현황) (2012년 누적) | ○<br>(산자부)  |    |
|    |         | 주통계   | 마을회관/경로당 운영비 지원 현황 (2013. 11 조사)               | ○<br>(행정조사) |    |
|    |         |       | 마을회관/경로당 상설프로그램 지원 현황(2013. 11 조사)             | ○<br>(행정조사) |    |
|    | 상수도     | 주통계   | 상수도 통계연보(상수도보급현황) (2011년 기준)                   | ○<br>(공식통계) |    |

6) 2012년 점검까지는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비율이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이기 때문에 공표통계로 분류함. 그러나 실제로 이 비율은 공표되지 않을뿐더러 통계청(통계개발원)의 협조를 구해야 하기에 ‘중앙행정기관 내부자료’로 분류함.

| 부문       | 관련 항목         | 통계 구분 | 통계명   | 구축 여부       | 비고 |
|----------|---------------|-------|---|-------------|----|
|          | 상수도           | 부통계   | 지자체 소규모수도시설 수질 관리 현황(2012년 기준)                          | ○<br>(환경부)  |    |
|          | 하수도           | 주통계   | 하수도 통계연보(하수도보급현황)<br>(2011년 기준)                         | ○<br>(공식통계) |    |
| 교통       | 대중교통          | 주통계   | 농립어업총조사 지역조사(대중교통<br>운행 횟수별 마을 수)(2010년 기준)             | ○<br>(공식통계) |    |
|          |               | 부통계   | 준공공교통 프로그램<br>운행 마을(2013. 11 조사)                        | ○<br>(행정조사) |    |
|          | 여객선           | 주통계   | 도서지역(시·군)별 본도(읍·면) 현황<br>및 여객선 운항 현황(2012년 기준)          | ○<br>(국토부)  |    |
|          | 인도<br>(人道)    | 주통계   | 농어촌 주요 생활도로 정비 시<br>인도구분 계획 여부 및 결과 구축<br>(2013. 11 조사) | ○<br>(행정조사) |    |
| 교육       | 유치원/<br>초·중학교 | 주통계   | 읍·면별 초·중학교 현황<br>(2013. 4 기준)                           | ○<br>(교육부)  |    |
|          |               | 부통계   | 읍·면별 초·중학교 통학버스 제공<br>현황(2013. 11 기준)                   | ○<br>(교육부)  |    |
|          | 고등학교          | 주통계   | 시·군별 우수고교 및 기숙형 고교<br>현황(2009년 기준)                      | ○<br>(교육부)  |    |
|          | 폐교            | 주통계   | 시·군별 초중고 폐교별 주민 의견<br>수렴 현황(2012년 기준)                   | ○<br>(교육부)  |    |
|          | 방과후<br>학교     | 주통계   | 시·군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br>현황(2012년 기준)                      | ○<br>(교육부)  |    |
|          | 의견수렴          | 주통계   | 시·군 교육발전위원회 조직 현황<br>(2013. 11 조사)                      | ○<br>(행정조사) |    |
|          | 평생교육          | 주통계   | 각 시·군, 읍·면별 평생교육기관<br>현황(비형식기관)(2013. 4 기준)             | ○<br>(교육부)  |    |
| 보건<br>의료 | 진료<br>서비스     | 주통계   | 내과·산부인과·치과 병의원,<br>한방병의원, 물리치료실 현황<br>(2012년 기준)        | ○<br>(복지부)  |    |
|          |               | 부통계   | 시·군별 산부인과 분만 여부<br>(2013. 11 조사)                        | ○<br>(행정조사) |    |
|          | 순회방문          | 주통계   | 의료 취약 마을 현황<br>(2013. 11 조사)                            | ○<br>(행정조사) |    |
|          |               |       | 행정리별 보건직원 순회방문진료<br>현황(2013. 11 조사)                     | ○<br>(행정조사) |    |
|          | 의약품<br>구입     | 주통계   | 전국사업체조사(의약품/의료용품<br>소매점, 공공의료 기관 현황)<br>(2011년 기준)      | ○<br>(공식통계) |    |

| 부문 | 관련 항목                      | 통계 구분 | 통계명  | 구축 여부       | 비고                             |
|----|----------------------------|-------|--|-------------|--------------------------------|
| 복지 | 노인                         | 주통계   |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br>(신청자, 판정자, 급여자 등 현황)<br>(2012년 기준)  | ○<br>(공식통계) |                                |
|    |                            |       | 노인복지시설현황(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 현황)(2012년 기준)                  | ○<br>(공식통계) |                                |
|    |                            |       | 노인돌봄종합(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 B)서비스 수혜자 현황<br>(2013. 11 조사) | ○<br>(행정조사) |                                |
|    | 청소년                        | 주통계   | 청소년수련시설 현황(2012년 기준)                                 | ○<br>(공식통계) |                                |
|    | 아동                         | 주통계   | 전국지역아동센터실태조사(전국지역 아동센터 현황)(2012년 기준)                 | ○<br>(공식통계) |                                |
|    |                            |       | 각 시·군·읍·면별 초등학교<br>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 운영 현황<br>(2012년 기준)   | ○<br>(교육부)  |                                |
|    | 영유아                        | 주통계   | 주민등록인구통계(만 5세 이하 영유아 현황)(2012년 기준)                   | ○<br>(공식통계) |                                |
|    |                            |       | 읍·면별 보육시설현황<br>(2012년 기준)                            | ○<br>(복지부)  |                                |
|    | 다문화 가족                     | 주통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방문서비스 제공 현황(2012년 기준)                    | ○<br>(공식통계) |                                |
| 응급 | 응급 서비스                     | 주통계   | 시·군별 각 전별 도착소요시간 자료<br>(2012년 기준)                    | ○<br>(소방청)  |                                |
|    | 도서·벽지<br>에 대한<br>응급<br>서비스 | 주통계   | 응급의료장비를 구비한 선박 및<br>헬기 현황(2012년 기준)                  | ○<br>(해경청)  |                                |
|    |                            |       | 응급의료장비를 구비한 헬기 현황<br>(2012년 기준)                      | ○<br>(산림청)  |                                |
|    |                            |       | 시·도별 EMS전용헬기운영 현황<br>(2012년 기준)                      | ○<br>(소방청)  |                                |
| 안전 | 경찰 순찰                      | 주통계   | 행정리별 5대 강력범죄 발생 현황<br>(2012년 기준)                     | △<br>(경찰청)  | 경찰서별(시·군별)<br>현황 구득<br>(활용 불가) |
|    |                            |       | 행정리별 일일 순찰 계획<br>(2012년 기준)                          | ✗<br>(경찰청)  | 자료 미구축                         |
|    | 방범설비                       | 주통계   | 행정리별 방범용 CCTV 설치 현황<br>(2012년 기준)                    | ✗<br>(경찰청)  | 자료 미구축<br>(행정조사 자료 활용)         |
|    |                            | 부통계   | 시·군별 포구/항만 현황 및 방범용 CCTV 설치 현황(2012년 기준)             | ○<br>(해경청)  |                                |

| 부문    | 관련 항목        | 통계 구분 | 통계명   | 구축 여부        | 비고                  |
|-------|--------------|-------|---|--------------|---------------------|
|       | 경찰 출동        | 주통계   | 시·군별 각 건별 도착소요시간 자료<br>(2012년 기준)                   | △<br>(경찰청)   | 시·군별 평균소요시간 구득      |
|       | 소방 출동        | 주통계   | 시·군별 각 건별 도착소요시간 자료<br>(2012년 기준)                   | ○<br>(소방청)   |                     |
| 문화    | 독서           | 주통계   |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br>(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문고) 현황)<br>(2013. 7 기준) | ○<br>(공식통계)  |                     |
|       |              | 부통계   | 대안 방안 운영 여부<br>(2013. 11 조사)                        | ○<br>(행정조사)  |                     |
|       | 문화 시설 및 프로그램 | 주통계   |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br>(문예회관 및 지방문화원 현황)<br>(2012년 기준)       | ○<br>(공식통계)  |                     |
|       |              |       | 시·군(지방문화원)별 관람 가능한 문화행사 프로그램 수<br>(2012년 기준)        | ○<br>(문광부)   |                     |
|       |              |       | 시·군별 문예회관 공연프로그램 수<br>(2012년 기준)                    | ○<br>(문광부)   |                     |
|       | 찾아가는 문화공연    | 주통계   | 읍·면별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개최 현황(2013. 11 조사)                 | ○<br>(행정조사)  |                     |
| 정보 통신 | 초고속망         | 주통계   | 시·군별 초고속망 구축 현황<br>(2012년 기준)                       | △<br>(창조과학부) | 해당 기준 100% 달성으로 간주함 |
|       |              |       | 시·군별 광대역통합망 구축 현황<br>(2012년 기준)                     | ○<br>(창조과학부) |                     |

### 1.1.2. 이행실태 점검 방법

#### □ 점검 방법 개요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2014년까지 농어촌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할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정책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그 이행실태를 매년 점검할 필요가 있다.
- 이행실태 점검 결과는 기본적으로 농어촌 시·군 전체의 ‘달성을’로 제시하였다. 여기서 달성을이란, 어떤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대해서 전체 대상 지역 중 달성하고 있는 지역의 비율을 의미한다.

- 예를 들어,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 달성을 ‘읍부 총 가구 수(A) 대비 읍부 도시가스 보급 가구 수(B)의 비중’, 즉 ‘ $B/A \times 100$ ’으로 계산된다.
- 지자체를 대상 지역으로 하는 항목의 경우, ‘달성 시·군의 비율’을 해당 서비스기준의 달성을로 제시한다.
  - 예를 들어, 청소년 항목의 경우, 각 지자체별로 청소년 관련 시설의 유무를 파악한다. 그러므로 그 전체 달성을은 전체 138개 시·군 중 몇 개 시·군에 해당 시설이 있는가를 판단한다.
- 각각의 농어촌서비스기준은 그 내용에 따라 달성이어야 하는 지역 단위가 다양하며, 이에 따라 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간 단위의 통계가 필요하다.
  - 농어촌서비스기준마다 달성이어야 하는 공간 단위가 시·군, 읍·면, 행정리 등 다양하며, 이에 따라 각 시·군별로 총 인구 및 가구, 읍 또는 면 지역 가구, 읍·면 수, 행정리 수 등을 기준으로 이행실태를 계산한다.
  - 예를 들어 ‘하수도 보급률 71% 이상’의 서비스기준 이행실태는 개별 시·군의 하수도 보급률을 파악하면 되지만,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 75% 이상’에 대해서는 시·군별 면부 가구와 면부 상수도 보급 가구를 알아야 한다. 또한 ‘공동시설프로그램 지원’과 같은 경우 각 행정리의 공동시설 현황과 이에 대한 지원 여부가 조사되어야 한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의 대상은 전국 138개의 도농복합시 및 군으로 하며, 도농복합시의 경우 필요 시 동지역을 제외하고 점검하였다.
  - 현재 농어촌 시·군은 충남 연기군이 2012년 7월 1일 부로 세종특별시에 편입됨에 따라 138개 시·군이다.
  - 충남 당진군은 2012년 1월 1일 부로 도농복합시로 승격되었다. 점검통계에 따라 2011년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도 도농복합시로 간주하였다.
- 행정리는 지자체 행정조사 시점(2013년 11월) 기준 행정리 수를, 그리고 읍·면은 2012년 기준 1,397개를 기준으로 한다.<sup>7)</sup>

- 단, 통계의 출처와 기준년도에 따라 2011년 기준의 읍·면 수(1,400개)와 센서스 및 지역조사 통계 이용 시 2010년 기준 행정리 수(36,295개)를 활용한다.
-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총 53개의 관련 통계(점검통계)를 활용하는데, 원칙적으로 점검통계의 기준년도를 직전 연도로 설정하였다.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2012년 기준의 통계를 활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2012년 기준의 통계가 아직 공표되지 않은 경우 2011년도 통계를 활용한다.
    - 예를 들어 상하수도통계, 전국사업체조사 등은 아직 2012년 기준 통계가 공표되지 않았으므로 2011년 기준의 통계를 활용한다.
  - 지자체 행정조사의 경우 2013년 11월 조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해당 결과는 2013년 10월 기준의 실태로 간주한다.

#### □ 농어촌서비스기준 32개 항목 점검 방법

-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농어촌서비스기준은 9개 부문, 3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다시 45개의 세부기준으로 구분이 된다.
- 32개 항목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각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항목별 세부기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해당 세부기준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점검할 수 있다.<sup>8)</sup>

---

7) 금번 이행실태 점검부터 연기군(現 세종특별시)과 당진군의 변동을 반영하여 2010년 기준 행정리 수와 2011년 기준 읍·면 수가 실제 수치와 다를 수 있음.

8) 2012년까지 이행실태 점검은 모든 세부기준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나,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고시된 32개 항목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를 반영하여 2013년부터 32개 항목별로 이행실태를 점검함.

- 첫째, 복수의 세부기준으로 구분되지 않는 서비스기준 항목의 경우 그 자체에 대한 이행실태가 해당 항목의 이행실태이다.
  - 예를 들어 주거 부문의 주택 항목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거주 가구) 비율을 90% 이상으로 한다’의 경우, 세부기준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항목의 이행실태는 ‘시·군별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수 / 총 가구 수 × 100’으로 계산할 수 있다.
- 둘째, 복수의 세부기준으로 구분되는 서비스기준 항목의 점검은 다시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된다.
  - 첫째, 복수의 세부기준 중 1개의 세부기준이 해당 서비스기준 항목의 중심내용이고 나머지 세부기준들이 이를 보완하는 경우, 그 중심 세부기준을 달성하였는지 점검한다.
    - 예를 들어, 주거 부분의 상수도 항목의 경우, ① ‘면지역 상수도보급률을 75% 이상으로 한다’와 ② ‘지자체는 원수 수질검사와 먹는물 수질기준에 따른 수질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2개의 세부기준으로 구분이 된다. 이때 ‘세부기준 ①’은 본 서비스기준의 중심내용이고, ‘세부기준 ②’는 이를 보완하는 지표이므로, ‘세부기준 ①’의 이행실태를 상수도 항목의 이행실태로 점검한다.
  - 둘째, 복수의 세부기준이 모두 해당 서비스기준의 중심내용일 경우, 그 세부기준들을 모두 충족하였는지를 점검한다.
    - 예를 들어, 복지 부문의 다문화가족 항목은 ① ‘자동차로 30분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와 ② ‘교통불편으로 센터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등 2개의 세부기준으로 구분이 되는데, 두 세부기준 모두 해당 항목의 중심내용이다. 따라서 두 세부기준으로 모두 달성하였는지를 점검한다.
- 이와 같은 방법으로 32개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의 이행실태 점검 방법을 검토한 결과, <표 2-3>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표 2-3. 32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내용 및 방법

| 부문 | 관련항목     | 서비스기준   | 점검 방법   | 비고  |
|----|----------|---|---|---|
|    | 주택       |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거주 가구) 비율을 90% 이상으로 한다.  | 시·군별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수 / 총 가구 수 × 100                                |   |
|    | 난방 보급    | 율지역 도시가스 주택보급률을 50% 수준으로 향고,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신체생에너지 난방비 저감정책을 우선 추진한다.                                       | 읍·면 도시가스 보급 가구 수 / 읍·면 전체 가구 수 × 100                              |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도시가스 미 보급에 대한 보완 사항                                    |
| 주거 | 마을 공동시설  | 경로당,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운영비 지원과 상설프로그램 지원 모임과 달성되어야 할 텁. 다만, 상설 프로그램 개소 이상 있는 행정리 수 × 100 | 운영비 지원과 상설프로그램 지원 모임과 달성되어야 할 텁. 다만, 상설 프로그램 개소 이상 있는 행정리 수 × 100 |
|    | 상수도      | 면지역 상수도보급률을 75% 이상으로 한다. 자체는 원수 수질점검사와 먹는물 수질기준에 따른 수질관리를 해야 한다.  | 시·군별 면부 광역 및 지방 상수도급수인구 / 시·군별 면부 주민등록인구 × 100                    | 지자체 수질 검사 및 관리 는 상수도 미보급에 대한 보완 사항                                |
|    | 하수도      | 하수도보급률을 71% 이상으로 한다.  | 시·군별 공공하수처리인구 수 / 시·군별 총인구 × 100                                  |   |
|    | 대중교통     | 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 정류장에서 노선버스, 순환버스 등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수요 대응형 준공공교통 프로그램을 도입 한다. | 도보 15분 내 정류장에서 하루 버스 운행 3회 이상인 행정리 수 / 도입 총 행정리 수 × 100           | 준공공교통 프로그램 운영은 대중교통 부족에 대한 보완 사항                                  |
| 교통 | 여객선      |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행된다. 도서의 주민은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 도서지역과 본도 간 노선별 연간 운행 횟수 / 365                                     | 여객선 운임 지원은 보완 사항  |
|    | 인도       | 읍·면 소재지에 접근하는 주요 농어촌 생활도로 일부 구간이라도 차도와 구분된 구간이 있는 도로 수 / 읍·면 소재지로의 주요 농어촌 생활도로 수 × 100                        |   |   |
| 교육 | 유치원/초등학교 | 지역 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차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저학년 단과를 제공한다.   | 초등학교가 있는 읍·면 수 / 초등학교 총 수 × 100                                   | 2013년 접경 시 농어촌 학교를 육성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과 같은 통학구단 체공은 보완 사항            |

| 부문     | 관련항목  | 서비스기준   | 점검 방법 | 비고   |
|--------|---|---|-------|--|
| 고등학교   | 시·군에 1개교 이상 우수 고등학교를 육성한다.  | 2011년 교육부에서 지정한 150개교의 기숙형 고교 유무                          |       |  |
| 체교     | 체교 시 학생들의 통학 및 폐교시설의 활용 대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폐교 수 / 폐교 수) × 100                        |       |  |
| 방과후 학교 | 교과 과목 특기 적성 등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 비율을 70% 이상으로 한다.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 × 100                                  |       |  |
| 의전수첩   | 시·군에 지자체와 교육청, 주민 등으로 구성된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여부   |       |  |
| 평생교육   | 읍·면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거점시설이 1개 이상 운영된다.                                       | (비형식 시설이 있는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                        |       |  |
| 진료 서비스 | 시·군 내에서 내과, 천장과, 물리치료실 등 종교 의료 의료 전문의사 진료가 가능하다.                                  | 주요 과목 진료 가능 여부 점검   |       | 주요 과목: 내과, 한방과, 산부인과, 물리치료실, 치과, 신부인과, 물리치료실                         |
| 보건 의료  | 순회방문 이상 보건소 등의 전문인력의 순회방문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 월 1회 이상 순회방문이 이루어진 의료 접근성이 낫은 행정리 × 100 점근성이 낫은 행정리 × 100 |       |  |
| 의약품 구입 | 자동차로 20분 내에 일반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   | 의약품 구입 가능 시설이 1개 이상 있는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              |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자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자) / 도움이 필요 한 노인 수 × 100 |
| 노인     | 도움이 필요 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제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       | 자세한 사항은 47~48페이지 Box 참조  |
| 청소년    | 자동차로 30분 내에 청소년센터에 도달할 수 있다.  | 시·군별 청소년 수련관·수련원·문화의집 운영 여부 점검                            |       |  |
| 아동     | 자동차로 20분 내에 초등학생들을 위한 아동센터 등 방과후 돌봄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 지역아동센터 또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                 |       |  |
| 영유아    |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자동차로 20분 내에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 보육시설이 1개소 이상 있는 읍·면 수 / 영유아 3명 이상 읍·면 수 × 100             |       |  |
| 다문화 가족 | 자동차로 30분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 교통불편으로 세터 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서비스를 수 있다. | 시·군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방문서비스 여부 점검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과 방문서비스 모두 체공시 일정  |

| 부문             | 관련항목   | 서비스기준   | 점검 방법   | 비고 |
|----------------|--|---|---|----|
| 응급<br>서비스      | 응급 구급차가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한다.   | 도착소요시간 30분 이내 건 수 / 총 건 수 × 100                           |   |    |
|                | 낙도 범지에 혈기·선박을 이용한 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 소방청, 해경, 산림청별 응급의료장비 구축 선박 및 헬기 운영 여부 확인을 통해 본 기준 이행실태 확인 | 모든 사항 구축 시 단계별로 장비 구축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단계별로 장비 구축 여부 확인                     |    |
| 안전<br>경찰       | 범죄취약 지역은 마을별로 1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   | (방범용 CCTV 설치 행정리 수 / 총 행정리 수) × 100                       | 마을별 CCTV 설치가 종 신내용이며, 청포구 CCTV는 보완 사항                                   |    |
|                | 철도, 강도 등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                                  | 시·군별 평균 도착소요시간 10분 이내 여부                                  |   |    |
| 경찰 출동<br>소방 출동 |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55% 이상으로 한다.                                   | 도착소요시간 5분 이내 건 수 / 총 건 수 × 100                            | 도서 대출/반납 시설이 중심내용이고, 대안적인 방법은 보완 사항임.                                   |    |
|                | 독서 울·면 내에서 도서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다.   | 공공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운영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                   |   |    |
| 문화<br>프로그램     | 자동차로 30분 내에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 도달할 수 있고,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과 복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 문화시설 유무와 (시설에 상관없이) 모든 공연 및 전시 프로그램 월 1회 이상 개최 여부 동시 점검   | 문화시설과 관람이 동시에 만족되어야 함.  |    |
|                |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과 지역 자체 문화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연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다.                      | 연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개최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              |   |    |
| 정보<br>통신       | 농어촌 어디에서나 초고속망 접속이 가능하고, 광대역통합망 구축률을 80% 이상으로 한다.                                    | 광대역통합망 구축 마을 수 / 총 마을 수 × 100                             | 초고속망과 광대역통합망 모두 중심내용이지만 광대역 통합망 구축은 초고속망 구축이 전제되어 있으므로 광대역통합망 구축률을 첨감함. |    |

주: 서비스기준 내용 중 강조된 내용은 32개 항목이 되는 중심내용을 의미함.

표 2-61. 시·도별 2013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달성을 비교

|         |          | 단위: % |       |       |       |       |       |       |       |       |
|---------|----------|-------|-------|-------|-------|-------|-------|-------|-------|-------|
| 분야      | 항목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도   |
| 1. 주거   | 주택       | 93.6  | 87.3  | 88.1  | 90.0  | 88.8  | 87.9  | 82.6  | 87.0  | 86.7  |
|         | 난방       | 73.0  | 14.6  | 43.9  | 41.8  | 21.8  | 26.2  | 44.8  | 36.1  | 0.0   |
|         | 마을공동시설   | 42.9  | 55.5  | 50.9  | 43.2  | 12.9  | 28.3  | 35.7  | 63.7  | 90.7  |
|         | 상수도      | 70.3  | 52.7  | 53.8  | 47.7  | 72.4  | 47.9  | 53.5  | 65.2  | 100.0 |
|         | 하수도      | 81.0  | 81.3  | 72.5  | 68.8  | 75.0  | 68.7  | 74.4  | 85.3  | 88.0  |
| 2. 교통   | 내증교통     | 95.8  | 88.7  | 89.7  | 92.7  | 93.2  | 89.6  | 85.2  | 88.0  | 93.0  |
|         | 여객선      | -     | -     | -     | -     | 100.0 | 100.0 | -     | 100.0 | 100.0 |
|         | 인도       | 28.5  | 19.2  | 9.8   | 9.8   | 7.1   | 8.2   | 5.7   | 12.6  | 18.4  |
|         | 유치원/초·중교 | 97.1  | 97.4  | 99.0  | 99.4  | 99.4  | 97.8  | 97.1  | 99.5  | 100.0 |
|         | 고등학교     | 93.3  | 73.3  | 100.0 | 80.0  | 84.6  | 95.2  | 78.3  | 100.0 | 0.0   |
| 3. 교육   | 체교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92.3  | -     |
|         | 방과후학교    | 68.8  | 62.7  | 87.0  | 86.1  | 78.0  | 81.5  | 87.5  | 88.9  | 87.9  |
|         | 프로그램     | 53.3  | 53.3  | 63.6  | 100.0 | 46.2  | 81.0  | 95.7  | 50.0  | 0.0   |
|         | 의전수첩     | -     | -     | -     | -     | -     | -     | -     | -     | -     |
|         | 평생교육     | 43.9  | 24.6  | 22.5  | 21.7  | 13.8  | 15.3  | 17.6  | 16.2  | 41.7  |
| 4. 보건의료 | 진료서비스    | 93.3  | 53.3  | 72.7  | 80.0  | 61.5  | 61.9  | 56.5  | 77.8  | 100.0 |
|         | 순회방문     | 58.6  | 1.0   | 35.2  | 40.4  | 27.4  | 9.7   | 54.3  | 45.3  | 100.0 |
|         | 의약품구입    | 97.8  | 98.2  | 100.0 | 99.4  | 99.4  | 100.0 | 100.0 | 100.0 | 100.0 |
|         | 노인       | 71.5  | 72.1  | 65.2  | 69.1  | 63.7  | 60.5  | 68.1  | 59.3  | 71.4  |
|         | 청소년      | 100.0 | 93.3  | 100.0 | 86.7  | 100.0 | 85.7  | 87.0  | 94.4  | 100.0 |
| 5. 복지   | 아동       | 97.1  | 97.4  | 99.0  | 100.0 | 99.4  | 98.3  | 94.5  | 100.0 | 100.0 |
|         | 영유아      | 93.5  | 82.5  | 71.6  | 77.0  | 60.4  | 66.8  | 63.4  | 58.9  | 100.0 |
| 다문화가족   |          | 100.0 | 73.3  | 100.0 | 93.3  | 100.0 | 90.5  | 100.0 | 100.0 | 100.0 |

| 부아       | 항목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도   |
|----------|----------------|-------|-------|-------|-------|-------|-------|-------|-------|-------|
| 6. 응급서비스 | 72.3           | 75.6  | 70.6  | 72.5  | 73.0  | 74.1  | 74.8  | 72.1  | 82.7  |       |
| 7. 안전    | 방범설비           | 35.7  | 35.1  | 47.1  | 33.2  | 28.2  | 13.9  | 37.1  | 24.5  | 61.0  |
|          | 경찰 출동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 소방 출동          | 27.7  | 46.4  | 50.2  | 53.9  | 58.7  | 49.1  | 30.8  | 43.5  | 62.9  |
| 8. 문화    | 독서             | 62.6  | 42.1  | 44.1  | 42.2  | 37.1  | 41.5  | 35.3  | 45.7  | 83.3  |
|          | 문화시설 및<br>프로그램 | 66.7  | 86.7  | 72.7  | 93.3  | 69.2  | 95.2  | 78.3  | 94.4  | 50.0  |
|          | 찾아가는<br>문화프로그램 | 59.7  | 34.2  | 46.1  | 30.4  | 34.0  | 39.7  | 29.4  | 15.7  | 100.0 |
| 9. 정보통신  | 초고속망           | 96.2  | 84.4  | 65.5  | 78.4  | 47.7  | 63.7  | 74.1  | 84.4  | 94.8  |

주 1) 음영으로 된 값은 해당 항목 서비스기준을 달성한 것을 의미하며, 굵은 글씨로 된 값은 달성하지 못했으나, 근사치를 의미함.  
 2) 응급 부문 도서벽지 응급서비스 이행실태 점검 결과는 시·도 광역자치단체별로 그 결과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안전 부문 경찰  
 순찰 항목은 이행실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에 본 시·도별 이행실태에서는 제외되었음.